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정을호 · 김준혁 · 홍기원
이병진 · 박상혁 · 이용선
부승찬 · 임오경 · 안태준
윤종균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구원의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학 진흥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조직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문화 심층 연구 및 교육 사업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법률에서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학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임원의 선임 방법과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뇌물죄 적용 시 공무

원으로 의제하는 등 공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특수 법인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목적, 법인격, 설립등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연구원의 사업을 한국문화 심층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고전의 수집·연구·번역 및 보급, 국내외 교류·협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원장, 이사, 감사의 정수·임기·선임방법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정부 출연금·보조금, 민간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세입세출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 마. 교육부장관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특정 범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21조 및 제24조).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설립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한국학”이란 과거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울러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인문·사회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유형·무형의 한국문화 자산을 구축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의 기획·수행 및 연구지원
과 정책 개발
 2. 국내·외 한국학 전문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
영
 3. 한국 고전자료의 수집·보존·정리·번역·연구 및 보급 확산
 4. 한국학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과 관련된 출판, 학술지 발간, 전시, 홍
보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6. 한국학 기초자료 관련 콘텐츠 구축·운영
 7.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제6조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
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 제8조(임원) ① 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 ② 원장 및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한
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원장추천위원회가 원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 중 2인은 국회가 추천(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그 외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한다)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감사 중 1인은 교육부장관이 이사회에 추천한다.

⑦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⑧ 임원(원장 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선거 운동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등 편향된 정치 활동으로

연구원의 공정성 또는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연구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구원의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정관의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기본규정의 제정과 폐지 등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의 임면) 연구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출연금 등) ①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양여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에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의 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관리지표 및 평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자 등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교육·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관

런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연구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비밀 유지 의무) 연구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구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의 등기부로 본다.

③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관은 제5조에 따른 연구원의 정

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제3조(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의 교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을 “「한국학중앙연구원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